

용인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

제정 2001. 2. 5 규칙 제257호
개정 2005. 10. 5 규칙 제424호(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)
일부개정 2014. 4. 7 규칙 제733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16. 3. 11 규칙 제829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,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,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4. 4. 7>

제2조(적용) 이 규칙은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지방별정직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 <개정 2014. 4. 7>

제3조(근속연수의 계산)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수당규정”이라 한다)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(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)으로 하되, 정직·휴직·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. <개정 2014. 4. 7>

제4조(지급계획의 수립) ①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·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공무원의 폐직이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4. 7>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, 지급신청기간,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4. 4. 7>

제5조(지급신청)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

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붙여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4. 4. 7, 2016. 3. 11>

제6조(지급심사대상)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이 초과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. <개정 2014. 4. 7>

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.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. <개정 2014. 4. 7>

제7조(지급심사기준)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, 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4. 4. 7>

1. 해당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
2. 「공무원연금법」상 장기근속공무원
3.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

제8조(지급절차)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4. 7>

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, 지급장소, 신청서류 및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4. 7>

제9조(수령권 승계)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,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공무원연금법」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05. 10. 5, 2014. 4. 7>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규칙 제424호,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14. 4. 7 규칙 제733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3. 11 규칙 제829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